

깨끗한 환경!! 우리가 지킵시다!!!

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안내

불법소각으로 인한 연기 및 유해물질 등의 피해는
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.



1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

- ▣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
- ▣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자재의 소각 금지
(페타이어나 폐전선 소각 금지)

2 불법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

- ▣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자
(폐기물관리법 제8조,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
불법소각행위 사례

- ✓ 사업장 내 난로에 팔레트, 합판, 각목 등 폐목재를 태우는 행위
- ✓ 밭이나 농장에서 비닐조각이나 끈, 장갑 등을 태우는 행위
- ✓ 공사현장에서 드럼통에 건설자재, 목재 등을 태우는 행위
- ✓ 기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한 종이, 비닐 등을 태우는 행위

3 불법소각 행위 신고처

- ▣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생활환경 담당

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간 및 야간에
지속적으로 불법소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, 불법소각으로
적발되어 행정조치(고발, 과태료 부과 등)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
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제주특별자치도
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